

지방공사총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총청북도총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4. 12. 14

나. 회부일자 : '94. 12. 14

3.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 개정준칙 시달

4. 주요골자

○ 의료원장 임면 : 이사회 추천에 의해 도지사 임면 ⇒ 임명의 경우에만 이사회
추천 (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 불요)

○ 의료원장 신분과 관련한 이사회 소집 : 기획관리실장이 소집 ⇒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이 소집

5. 검토 의견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설치조례증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본조례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로는

첫째, 현행 의료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면토록 되어있는 것을 임명의 경우에만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등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추천이라는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의료원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인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던 것을, 이사인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는 이사회의 실무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첨 부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설치조례증 개정 조례(안)